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

□ 검토의견

○ 내용 타당성

-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주둔 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설치 운영중인 파주시 한미친선협의회 구성과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첫째, 협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위촉직 위원 경우 그 선정에 있어 폭 넓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둘째, 동 조례안 제7조 회의규정의 경우 협의회 운영의 공개근거를 확실히 하고 조문의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